2013.9.2 제249章 Weekly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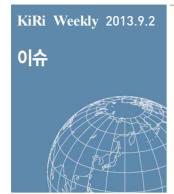
공동(재)보험의 단일요율과 요율투명성에 대한 공정경쟁 측면의 검토 필요

글로벌 이슈

중국경제 과도한 부채 우려 지속 MBK파트너스,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계약 체결

금융시장 주요지표





공동(재)보험의 단일요율과 요율투명성에 대한 공정경쟁 측면의 검토 필요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 공동(재)보험의 경쟁제한성과 비효율성이 간헐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동(재)보험이란 복수의 원수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가 비율을 정해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함
- EU집행위는 2005년 6월부터 청약방식 공동(재)보험 계약체결과정에서 관찰된 공동행위가 EU 경쟁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쟁법 적용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음.
 -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이란 계약자 및 브로커가 입찰을 통해 간사사를 선정한 후, 간사사의 요율 및 조건에 따라 후발참여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EU집행위가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에서 제기한 이슈는 단일 요율 및 조건, 요율투명성. 최혜대우조항임.
 - EU집행위에 따르면 보험산업이 단일 요율 및 조건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동 공동행위로 인해 계약자가 누리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이에 대해 보험산업은 공동(재)보험에서 단일 요율 및 조건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사후적 결과일 뿐 사전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는 시장 효율성을 방증할 뿐 아니라, 신속한 담보력 확보. 계약자 서비스 제고 등 계약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함.
- EU집행위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내 공동원수보험제도에 경쟁제한성 및 담합 가능성이 상존함.
 - 우리나라 공동원수보험의 경우 단일 요율 및 조건이 참여사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해진 "게임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 및 담합 가능성이 EU의 공동(재)보험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방식의 공동원수보험제도 유지로 인한 효율성 제고효과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에는 공동원수보험방식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공동재보험의 경우 국경 간·기업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대한 정책당국의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는데, 국내 원수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험을 분산할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최근 E∪집행위는 공동(재)보험의 단일요율 및 요율투명성에 대한 실태 조사보고서¹)를 발표하였는데,
 상기 공동행위에 대한 E∪의 경쟁법 위반 여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²)
 - EU집행위는 2005년 6월부터 공동(재)보험 계약체결과정에서 관찰된 공동행위가 EU 경쟁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음.
 - 공동(재)보험이란 복수의 원수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가 비율을 정해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함.³⁾
 - 보험산업의 경쟁법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EU가 거래당사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오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집중됨.
- ♣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원수보험의 경쟁제한성 및 담합 가능성이 간헐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그리고 정책적 접근이 미흡함.
- 이에 본고에서는 공동(재)보험의 단일 요율 및 요율정보공개 관행에 대한 EU의 경쟁법 적용 또는 적용 면제의 경제적・법적 논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¹⁾ European Commission(2013), "Study on Co(re)insurance Pools and Ad-hoc Co(re)insurance Agreements on the Subscription Market".

²⁾ 구분 필요시에는 공동원수보험과 공동재보험이라 표현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재)보험으로 표현함.

³⁾ 공동(재)보험은 Pool과 Ad-hoc agreement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는 특별물건 공동(재)보험, 후자는 개별물건 공동(재) 보험으로 불리며, 본고에서는 개별물건 공동(재)보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2. 우리나라 공동(재)보험 운영 실태



- -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은 국내 11개 원수보험회사 및 4개 외국보험회사 간의 상호협정으로,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에 의거해 운영됨.⁴⁾
 - 손해보험 계열사가 없는 대기업군 계약자 또는 한국전력, 포스코 등 공기업군 계약자들의 고액계 약이 대다수 공동인수에 의해 운영됨.
 - 특히, 건설공사보험 등 기술보험은 공동인수비율이 대형사 기준 80%를 넘어 공동인수가 관행적으로 정착된 분야라 할 수 있음.
- 참여사는 서로 다른 요율과 보험조건으로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사의 요율과 조건을 사용함.
 - 공동보험 참여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보험요율이 간사사(leader)의 요율과 다를 경우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에 위반됨.
- **!!** 공동원수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공동인수 시 간사사와 참여사간 참여비율 결정방법의 불투명성, 그리고 특히 간사사의 요율과 보험조건을 참여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음.
 - 또한 참여사들은 간사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해당 공동인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인맥중심영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국내 원수보험회사가 위험규모가 큰 물건을 출재할 경우에도 주로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이 이용되고 있음.

⁴⁾ 공동보험 Pool의 운영은 다음에 근거함: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방위산업체, 국유물건; 화보협회 운영), 원자력보험공 동인수상호협정(원자력 물건; 코리안리 운영),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소형선박, 보세물건 등; 손보협회 운영), 자동 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자동차; 자동차보험부량물건공동인수운영위원회 운영)에 근거함.

- 즉. 원수보험회사 및 브로커는 후발참여사에 간사사가 합의한 요율 및 조건을 제시함.
 -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이란 계약자 및 브로커가 입찰을 통해 간사사를 선정한 후, 간사사의 요율 및 조건으로 후발참여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표 1〉 공동(재)보험: Pool vs. Ad-hoc agreements

구분	Co(re)insurance Pool : 특정물건 공동(재)보험	Ad-hoc Co(re)insurance agreements : 개별물건 공동(재)보험	
대상	특정위험물건(원자력, 테러 등)	일반위험물건	
운영목적	위험의 거대성에 따른 보험회사 인수기피(시장 실패), 정책적 목적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특성	
보험회사 선택권	특정운영기관이 선정되어 있어 계약자의 선택 권 없음	보험계약자	
인수지분율 결정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에 의해 결정	보험계약자와 참여보험회사	
계약형태	계약자와 서비스 대행기관(운영기관)간의 보험 계약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1:1 개별계약	

3. EU경쟁법과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칙



- EU조약 101조 1항은 공동체 시장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경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자 간 합의, 사업자 단체의 결정, 동조적 행위 등을 금지함.
 - EU의 반독점규정은 EU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1조에 근거한 경쟁제한적 계약 및 관행을 규제하는 규정과 102조에 근거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함.

- ## EU조약 101조 1항의 경쟁제한적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 EU조약 101조 3항의 개별적 면제요건을 충족시키거나.
 - 해당산업의 일괄면제규칙(Block Exemption Regulation)에 해당해야 함.

➡ 구체적으로, EU조약 101조 3항은 경쟁제한적 공동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5)

- ① 사업자간 합의・결정・동조적 행위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을 향상시키거나 기술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고, ② 소비자가 공정하게 이익의 일부(fair share)를 향유하여야 하며, ③ 제한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경우이어야 하며, ④ 합의가 문제된 상품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하여 경쟁을 제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6)
- 즉, EU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제한적 합의가 기술진보를 통한 비용 효율성, 또는 질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다 값싸고 더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간 경쟁제한적 합의를 자동적으로 허용함.7)
- 그리고 경쟁제한적 합의를 EU조약 101조 3항에 의거하여 허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경쟁제한적 합의로 인해 생산의 개선효과와 기술진보가 이뤄짐으로써 발생한 소비자 후생 증가분이 당해 경쟁제한적 합의로 인한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함.

■ 또한, EU집행위는 보험산업 내 특정한 범주의 공동행위에 대해 EU조약 101조 1항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일괄면제하고 있음.8)

- EU집행위는 2010년 3월 24일 Regulation 267/2010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① 통계집적, 통계표, 연구에 관한 공동행위, ②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보험 Pool에 대해 EU조약 101조 1항의 적용을 일괄면제하고 있음.
 - 모든 공동보험 Pool이 일괄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① 신규위험을 첫 3년 동안 커버

^{5) 2004}년 5월 1일부터 101조 3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법적인 예외를 인정받게 됨. 따라서 사업 자는 당해 합의의 위반 여부 판단을 집행위에 요청할 필요 없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됨. 집행위는 그러한 판단을 돕기 위해 EU조약 101조 3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을 제공하고 있음.

⁶⁾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paragraph 34.

⁷⁾ 공정거래위원회(2008), 「EU의 경쟁법 판례 분석」.

⁸⁾ EU 이사회 및 집행위는 보험산업뿐 아니라 육상운송, 해상운송, 수직적 거래제한, 기술이용허락, 자동차유통 등에 관한 다수의 일괄적용면제규칙을 제정하여 일정한 범주의 합의에 대하여 EU조약 101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음.

하는 Pool은 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일괄면제대상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신규위험이 아닌 경우 시장점유율이 공동보험 Pool 20% 이하, 공동재보험 Pool 25% 이하이면 일괄면제대상 공동행위에 해당함.

- EU집행위는 보험산업에 대한 일괄면제규칙을 1991년 제정한 이후 총 세 차례 갱신하였으며,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제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함.
 - 일괄면제규칙의 갱신 시 다음 3가지 사항을 고려함: ① 공동행위가 불가피할 정도로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보험산업에서 특별한지 여부, ② 만약 그렇다면, 법제를 통해 보험산업의 공동행위를 보호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 만약 그렇다면, 일괄면제규칙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9)

〈표 2〉 EU의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칙(BER)에 의한 경쟁법 적용면제대상 공동행위

Council Regulation 1534/91 (1991.05~1993.03)	Com. Regulation 3932/92 (1993.04~2003.03) Com. Regulation 358/2003 (2003.04 ~ 2010.03)	Com. Regulation 267/2010 (2010.04~2017.03)
 공동의 손해통계 등에 기초한 공동의 위험보험료율 산정 특정위험에 대한 공동보험 원수보험 공동표준약관 제정 안전장치에 대한 검사 및 실행 기준 등의 마련 클레임 처리 악화된 위험에 대한 등록과 이에 대한 정보 	 공동의 손해통계 등에 기초한 공동의 위험보험료율 산정 특정위험에 대한 공동(재)보험 Pool 원수보험 공동표준약관 제정 안전장치에 대한 검사 및 실행 기준 등의 마련 	 통계집적, 통계표, 연구 특정위험에 대한 공 동(재)보험 Pool

■ 보험회사의 공동행위가 일괄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 법원은 해당 공동행위가 101조1항의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101조 3항에 의한 개별적 면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⁹⁾ European Commission DG Competition(2009), "New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그림 1〉 EU경쟁법과 면제규정

TFEU 101 (1) 경쟁제한적 공동행위 금지조항

TFEU 101 (3) 개별면제조항 4가지 조건 충족시 자동면제 조건 충족 입증 책임: 사업자 보험산업일괄면제규정(BER)

- 공동(재)보험 Pool
- 통계집적, 통계표, 연구

4. EU가 제기한 공동(재)보험의 반경쟁 이슈와 논리



- 공동(재)보험 Pool과 달리, 청약방식의 개별물건 공동(재)보험은 보험산업 일괄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재)보험에서 관찰된 공동행위가 101조 1항의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101조 3항의 개별적 면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EU집행위는 원자력, 테러, 환경위험 등과 같은 특정 위험의 경우 개별 (재)보험회사가 전체 위험을 단독으로 인수하기를 꺼려하거나 인수할 능력이 없으므로 공동인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여 공동재보험 Pool을 일괄면제대상으로 함.
- EU집행위는 2005년 6월부터 공동재보험 계약체결과정에서 관찰된 공동행위가 EU조약 101조 1항의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음.
 - 2002년 12월 제정된 Regulation 1/2003의 17조에 따라 EU집행위는 회원국 간의 교역 행태, 가격의 경직성,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분야의 경쟁이 저해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정 산업부분 또는 여러 산업부분에 걸친 합의에 대해 시장분석(sector inquiry)을 실시할 수 있음.
 - 이에 2005년 6월 EU집행위는 기업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진입조건, 채널관련 수직적 합의, 공동보험 관련 공동행위, 표준약관조항에 대한 합의, 리스크 관련 데이터 공유 등을 조사하기로 함.

- 2007년 1월과 9월에 각각 시장분석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EU집행위의 시장 분석에서 제기된 공동보험 관련 반경쟁적 행위 실태조사 보고서가 2013년 발표됨.¹⁰⁾
- - 먼저, 계약자와 브로커가 위험분산 측면에서 1개 (재)보험회사에 전체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간사사가 전체 위험을 100%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추가 담보력 확보를 위해 공동보험을 결정함.
 - 브로커가 계약자와 협의하에 계약초안을 작성한 후 간사사에 적합한 (재)보험회사들에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입찰을 통해 보험료・보험조건・인수지분율 등을 포함한 견적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간사사 및 조건을 결정함.
 - 2단계 청약방식: 브로커는 추가 담보력 확보를 위해 간사사가 합의한 보험료 및 조건을 2단계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후발참여사(follower)들과는 인수지분율에 대해서만 협상함.
 - 유럽보험중개사협회(BIPAR)에 따르면, 청약방식일지라도 후발참여사는 간사사와 다른 요율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계약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음.
 - 2단계 비청약방식: 브로커는 2단계 후발참여자들에 간사사가 합의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요율과 인수지분율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입찰에 붙임.
 - 2013년 EU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이 전체 공동(재)보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이용됨.
- EU집행위가 청약방식 공동(재)보험에 대해서 공정경쟁 측면에서 제기한 이슈는 다음 3가지로 정리될수 있음.
 - ◎ 첫째, 공동(재)보험 참여사간 단일 요율 및 조건
 - 둘째. 최혜대우조항(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 적용
 - 셋째, 간사사가 합의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정보를 후발참여사들에 공개

¹⁰⁾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competition/sectors/financial_services/inquiries/business.html).

¹¹⁾ 공동재보험 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별, 보험종목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브로커가 없는 계약에서는 간사사가 후발참여사에 접촉. 요율 및 조건을 협상하기도 함.

가. 단일 요율 및 조건

- E∪는 후발참여사 선택 시 간사사 합의 요율 및 조건을 제시하고 입찰이 아닌 청약을 이용하는 메커니 즘이 간사사 결정을 위한 입찰단계에서 (재)보험회사끼리 담합할 유인을 제공하므로 경쟁법 위반의 여 지가 있다고 주장함.
 - 간사사가 합의한 단일 요율 및 조건이 모든 참여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입찰단계 동안 (재)보험회사 간 담합할 인센티브가 있음.
 - 즉, 간사사와 후발참여사가 단일 요율 및 조건을 유지할 경우, (재)보험회사들이 입찰단계에서 가능한 낮은 요율로 입찰하는 것은 스스로 청약단계에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부과하는 셈임.
 - 더욱이 요율 투명성 때문에 담합에 대한 이탈여부를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 유인이 감소함(즉. 담합성공가능성 높음).
 - 또한 후발참여사 선택 시 청약이 아닌 입찰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계약자는 더 이로운 계약조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계약자가 더 이로운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함.
 - 후발참여사들은 간사사에 비해 더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비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유리한 계약조건을 만들 수 있음.
 - EU는 브로커가 시장관행이라는 이유로 차등계약에 대한 여지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계약자에게 단일계약 외에 차등계약 등 모든 이용 가능한 옵션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보험산업은 공동(재)보험에서 단일 요율 및 조건은 시장 효율성을 방증할 뿐 아니라, 신속한 담보력 확보, 계약자 서비스 제고 등 계약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함.
 - 무엇보다도, 단일 요율 및 조건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사후적 결과일 뿐 사전적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는 간사사 결정을 위한 입찰단계에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서 청약단계에서 효율성 개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계약자 및 브로커가 공동보험회사 결정 시 입찰을 통해 더 유리한 요율 및 조건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추가 입찰 설계를 위한 시간, 행정비용 등 거래비용이 단일 요율 및 조건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클 수 있음.
 - 후발참여사 결정을 입찰이 아닌 청약방식으로 할 경우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담보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증권 및 관련 문서 단일화, 손해사정절차 단순화, 클레임 분

- 쟁 감소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단일 요율 및 조건의 청약방식일 경우 공동보험회사는 신속하고 용이한 보험료 분배 및 손해사정, 보장내용과 약관 해석에 대한 분쟁 시 신속한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 EU집행위에 따르면 보험산업이 단일 요율 및 조건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동 공동행위로 인해계약자가 누리는 이익(즉, 효율성)이 그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즉, 단일 요율 및 조건으로 귀결되는 청약방식 공동보험의 효율성 제고효과가 그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이는 EU조약 101조 3항에 따라 경쟁법 적용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EU가 공동(재)보험의 단일 요율 및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유럽보험중개사협회는 2008년 4월 후발참여사가 개별 보험료를 협상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공동보험중개 5원칙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르면, 브로커는 위험을 부보하기 전에 계약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보험구조(예, 단독보험/공동보험)를 설계 및 자문해야 함.
 - 계약자가 공동(재)보험 설계를 지시하면 브로커는 다양한 공동보험 방식(청약/비청약 등)을 계약자에 설명해야 함.
 - 또한, 후발참여사가 간사사의 요율보다 더 높은 요율을 제시한 경우 간사사를 비롯한 타 후발참여 사의 요율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브로커는 간사사 및 후발참여자의 최혜대우 요청을 유보해야 함.
- 한편, EU는 2013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동보험참여사간 보험료 일치를 위한 어떠한 반경쟁적 합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일 요율 및 조건이 사용된 것을 확인함.
 - 유럽보험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후발참여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잔여위험을 평가하고 개별 보험료를 협상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후발참여사의 요율 및 조건은 간사사와 대부분 일치 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공동(재)보험 요율 결정 방식

구분	(재)보험회사 제시 조건으로 협상	간사사 결정	계약자 제시 조건 토대로 협상	기타	합
응답자 수	67	52	41	19	131

주: 응답자는 브로커, 언더라이터, 계약자로 구성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나, 최혜대우조항(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

- - 최혜대우조항(Best Term and Condition Clause)은 후발참여사가 잔여위험을 인수하기 위해 간사사 등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계약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모든 참여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하는 조항임 12)
- 유럽보험중개사협회는 공동(재)보험중개 5원칙에서 간사사 등이 최혜대우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것을 권고함.
- 2013년 EU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EU (재)보험시장에서 최혜대우 요구 및 수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재)보험회사가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 최혜대우 요구 감소는 보험시장의 언더라이팅 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즉. 담보력이 부족한 경성시장일수록 (재)보험회사가 최혜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

〈표 4〉 지난 5년 동안 최혜대우 요구를 받은 경험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
응답자 수(명)	23	13	29	65

주: 응답자는 브로커와 계약자로 구성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¹²⁾ 대개 최혜대우를 의미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사용됨: same terms as most favored reinsurers, most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to apply, warranted no better terms carried.

〈표 5〉BIPAR 원칙3과 원칙4 준수 실태

구분	항상	기끔	아니오	평가불가	합
원칙3 응답자 수(명)	55	16	3	16	131
원칙4 응답자 수(명)	50	20	4	16	131

- 주: 1) BIPAR 원칙3은 브로커가 계약자에 다양한 공동(재)보험 구성방식에 대해 자문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칙4는 최혜 대우 금지를 권고하고 있음.
 - 2) 응답자는 브로커, 언더라이터, 계약자로 구성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다. 요율 및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

EU는 공동(재)보험의 요율 및 조건 투명성이 참여 보험회사 간 담합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함.

- 브로커는 청약단계에서 간사사가 합의한 요율 및 조건을 요율산출 및 위험평가 능력이 간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후발참여사들에 공개함.
- 간사사와 후발참여사 간 사전적인 담합협정이 있는 상황에서 요율 및 조건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담합협정 준수여부가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담합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낮아져 담 합성공가능성이 높아짐.
- 2007년 EU집행위는 실제 담합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보험료 담합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함.

반면, 보험산업은 요율 및 조건에 대한 정보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함.

● 청약단계에 참여하는 (재)보험회사들이 간사사의 요율 및 조건을 따르지 않고 해당 리스크를 재평 가하고 각자 자사요율을 산출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비용은 결국 계약자에게 전가될 것임.

5. 결론 및 시사점



가. 공동원수보험

- - 후발참여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이 간사사의 요율과 다를 경우 보험업법 127조의 2(기초서 류변경의 신고)에 위반사항임.
 - 보험업감독규정 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 산출기준) 제2항 제2호는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EU집행위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내 공동원수보험제도에서 경쟁제한성 및 담합 가능성이 상존함.
 - 우리나라 공동원수보험은 단일 요율 및 조건이 참여사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해진 "게임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 및 담합 가능성이 EU의 공동보험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방식의 공동원수보험제도 유지로 인한 비용과 효율성 증진효과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에는 공동원수보험방식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국가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보험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언더라이팅 · 요율산출 능력 등 보험산업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방식 공동보험 금지로 인한 비용과 이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효율성이 국가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
 - 현행 방식의 공동원수보험제도에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그것의 효율성 제고효과가 그 비용보다
 크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¹³)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

¹³⁾ 공정거래법 19조 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 19조 1항의 적용을 면제함.

보험의 단일 요율 및 조건과 요율정보공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공동재보험

- 이러한 시장흐름에 맞춰 국내 원수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함.
 - 재보험의 경우 국경 간·기업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대한 정책당국의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kirli